

# 학생활동 지원규정

□ 제정 : 2017.01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대학교 학생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학생활동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- ① 학·예술 분야 역량증진을 위한 학술제 및 축제, 방송제, 졸업작품전 등의 학생행사
- ② 학생 간 교류증진을 위한 신입생환영회 및 MT, 체육대회 등의 학생행사
- ③ 대학생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봉사활동
- ④ 우호증진과 동호를 위한 동아리활동
- ⑤ 기타 학생자치기구가 개최하는 행사

제3조(지원범위) 학생활동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① 학생활동의 안전과 공익성을 위한 교육 및 특강
- ② 행사경비의 일부 지원
- ③ 졸업자격과 관련된 봉사활동 시수 인정
- ④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

제4조(지원체계) ① 학생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학생지원처에서 총괄한다.

- ②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 학생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학부(과)와 행정부서에서는 사전에 학생지원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④ 동아리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학생활동의 승인) ① 학생활동으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활동주체는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학생활동주체는 행사집회신고서 또는 행사계획서등의 공문을 통해 학생활동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집단연수인 경우 ‘수원대학교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’을 준수해야하며, 숙박하는 경우 학생지원처장이 정한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필해야한다.
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학생활동 지원 규정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.